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51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한준호 · 이연희 · 임미애
강준현 · 조계원 · 김 윤
김기표 · 차지호 · 김태선
최혁진 · 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공영성·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공영성·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방송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5호에”를 “제2항제5호에”로

한다.

- ① 진흥회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임명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임명하거나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 ③ (생략)	제6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u>방송에</u>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④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에</u> ----- ---.
<u><신 설></u>	1. <u>방송학 · 언론학 · 전자공학 · 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 ·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신 설></u>	2. <u>방송 ·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 · 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신 설></u>	3. <u>방송 ·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신 설></u> ⑤・⑥ (생 략)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u><신 설></u> ① <u>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u> 1. ~ 6. (생 략) ② <u>제1항제5호에</u>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u>진흥회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회는</u>----- ----- -----. 1. ~ 6.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제5호에</u>----- ----- ----- ---
---	--